

발행인 : 서울특별시

편집인 : 공보관

731-6111~3

# 서울시보

제 1920 호 1995. 9. 5.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 규 칙
  - 제 2709호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3
  - 제 2710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6
- 훈 령
  - 제 823호 서울특별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규정..... 11
- 예 규
  - 제 609호 서울특별시홍보물심의에관한지침중개정지침..... 13
- 고 시
  - 제 1995-251호 사료성분등록..... 14
- 공 고
  - 제 1995-241 호 소방시설의설계업및공사감리업등록공고..... 16
  - 제 1995-242 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신청공고..... 17
  - 제 1995-243 호 다단계판매업업무정지처분공고..... 17
- 공 문 시 행
  - 물품관리전환소요조표..... 17

(이면계속)

공 람																				
람																				

● 구 고 시

- 제 1995-75 호 도시계획사업(월암교~종암대교간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18
- 제 1995-22 호 도시계획사업(후암동389-21~378-2간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용산)····· 20
- 제 1995-23 호 도시계획사업(후암동412-20~410-2간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용산)····· 20
- 제 1995-2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폐지인가(강북)····· 21
- 제 1995-33 호 도시계획사업(용암동68-1~70-12간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은평) · 22
- 제 1995-34 호 도시계획사업(서부소방서역촌파출소청사)실시계획인가(은평)···· 24
- 제 1995-34 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도봉)····· 24
- 제 1995-58 호 도시계획사업(오류1동4번지주변도로)실시계획인가(구로)····· 25
- 제 1995-49 호 도시계획사업(청계산근린광장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서초)···· 26
- 제 1995-7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성북)····· 26
- 제 1995-34 호 도시계획사업(신림12동주거환경개선지구진입도로)실시계획인가(관악)····· 28
- 제 1995-50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도로·광장)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서초)··· 29

● 구 공 고

- 제 1995-288 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서초)····· 32
- 제 1995-134 호 도시계획사업(사당동지역사회복지관신축)실시계획공람공고(동작) 32
- 제 1995-171 호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공람공고(성동)····· 33
- 제 1995-116 호 연차별집행계획수립공고(용산)····· 34
- 제 1995-94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금천)····· 35
- 제 1995-218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성북)····· 35
- 제 1995-188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관악)····· 36
- 제 1995-157 호 투기과열지구지정(구로)····· 36
- 제 1995-216 호 건축허가및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허가를위한서류공람공고(성북)····· 37
- 제 1995-155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구로)····· 37
- 제 1995-113 호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토지등보상계획열람공고(강북)··· 37
- 제 1995-307 호 도시계획공람공고(노원)····· 38
- 제 1995-309 호 투기과열지구지정(노원)····· 40
- 제 1995-156 호 투기과열지구지정(송파)····· 40
- 제 1995-178 호 도시계획사업(수색동~신사동간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공람공고(은평)····· 40

● 한강관리사업소고시

- 제 1995-90 호 하천점용허가····· 41
- 제 1995-92 호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허가)····· 42
- 제 1995-93 호 하천점용허가····· 42
- 제 1995-94 호 하천점용허가····· 42

● 인 사 발 령

# 규 칙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5. 9. 5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㉔

## ●서울특별시규칙제 2709 호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법규정비심의회”를 “조례규칙 심의회”로 한다.

제 3 조제 1 호 중 “훈령”을 삭제하고, 동조 제 5 호 중 “예규문서”를 “훈령·예규문서”로 한다.

제 4 조 중 “준용규정 이외의 사항도”를 삭제한다.

제 6 조 중 “결정 전후”를 “결정 전”으로 한다.

제 7 조제 3 항 중 “법규정비심의회(이하 “법규정비심의회”라 한다) 개최 15일 전”을 “조례규칙 심의회개최 7일 전”으로 한다.

제 12 조 중 “법규정비심의회”를 “조례규칙 심의회”로 한다.

제 15 조제 2 항 중 “별첨예고안”을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으로 한다.

제 16 조제 1 항 중 “시보와 서울시민신문”을 “시보”로 하고, “반상회보에 게재의뢰 또는”을 삭제한다.

제 20 조 중 “제출된 의견을 주관과장이 이를”을 “주관과장은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로 하고 “법규정비심의회”를 “서울특별시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제 22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2 조의 2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제 13 조 내지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개청문에 의한 의견제출 외에 조례·규칙의 정비·개선에 관련된 의견은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당해 의견 및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이견이 없는 경우, 조례·규칙의 정비를 추진하고 결과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 조를 삭제한다.

제 4 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4 장 조례규칙심의회

제 24 조(구성) ① 서울특별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시장, 부시장과 1급 간부 및 공보관을 포함한 실·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시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5 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로 본다.

④ 심의회는 반드시 공식적인 회의로 개최하여야 하며,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심의사항) 심의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적 심의·의결사항

가. 조례안

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

다. 규칙안

2. 임의적 심의·보고사항

가. 예산안

나. 결산안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라. 기타 훈령·예규·공고·고시 등의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

제27조(의안제출) ① 심의회 위원인 1급간부 및 공보관을 포함한 각 실·국장은 제26조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직속기관·사업소 등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인 소관 실·국장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규칙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

하여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정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합의)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국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실·국간의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29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국의 주무과장·담당관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출석한 과장, 담당관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30조(배석) ① 심의회에는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기술심사관 및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사업소장과 공사의 사장 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직위에 있는 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배석자는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31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국의 과장·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간사 등)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

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서기는 법제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부시장, 위원 및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제35조 내지 제62조를 각각 제33조 내지 제60조로 한다.

제37조(중전의 제39조) 제1항제1호 중 “별첨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중 “별첨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중전의 제40조) 제1항 중 “시민1과장”을 “시민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훈령은”을 “훈령 및 예규는”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40조(중전의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중전의 제45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청심사위원회결정 및 행정심판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

제43조(중전의 제45조) 제2항 중 “구청장, 사업소장”을 “구청장, 사업소장 및 민원인”으로 한다.

제44조(중전의 제46조) 제1항 중 “사전심의”를 “사전심사”로 한다.

제46조(중전의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7조(중전의 제49조) 제3호, 제49조(중전의 제51조) 제1호 및 제50조(중전의 제52조) 제1호 중 “예규문서”를 각각 “훈령·예규문서”로 한다.

제48조(중전의 제50조) 제2항 중 “별첨형태의”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으로

하고, “별첨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의”로 한다.

제51조(중전의 제53조)를 삭제한다.

별첨서식 중 <예고안 작성>을 제1호서식으로 하고, <조례공포전문>, <규칙공포전문>, <훈령발령전문>, <중요문서고무인>, <중요문서심사기록대장>을 각각 제4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제2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93. 7. 1 대통령령 제14692호)됨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훈령을 자치법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요문서로 분류함(제3조).
- 나. 입법예고방법 중 서울시민신문 및 반상회보 게재에 의한 방법을 삭제함(제16조).
- 다. 누구든지 조례·규칙의 정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 검토 후 적극 반영하도록 함(제22조의 2).
- 라.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폐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 내지 제32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5. 9. 5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㉔

●서울특별시규칙제 2710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 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의 규정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보육사업"(이하 "보육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보육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보육센터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4. "시제품제작"이라 함은 장래의 양산물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퇴거"라 함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수탁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출소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제입주일"이라 함은 입주자가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집기류 등을 보육센터에 설치하는 최초의 날을 말한다.

제 2 장 운영조직·관리 등

제 4 조(업무의 협의)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보육센터 운영계획
3. 예산이 수반되거나 입주자의 권리변동과 관계되는 지원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탁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고서의 제출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의 취급상황이나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 또는 입주업체의 여론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6 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보육센터의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업체의 개발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근무자 파견) ① 시장은 보육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 근무를 위하여 파견될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 8 조(수탁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한 재산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주 및 지원

제 9 조(입주신청) 보육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센터 소정의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입주승인) ① 수탁자가 입주승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조사·평가하고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선임한 보육센터의 운영책임자(이하 "소장"이라 한다)가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승인제외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패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3. 휴·폐업중인 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12 조(예비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 13 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실제입주일로부터 6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소장이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육센터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 15 조(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자가 입주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사유와 입주연기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입주연기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승인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자와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7조(입주부담금) 입주부담금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률을 적용한다.

제18조(입주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① 임대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월별로 징수한다.

③ 냉·난방 및 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 공공요금은 매월 징수한다.

④ 기타 공용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 등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실비를 기준으로 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운영규정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보육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보험가입) 소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입주일 이전까지 관련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지원) ① 수탁자는 창업자원과 관련한 첨단산업분야 또는 핵심애로기술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규모 및 범위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소장은 졸업자에 대하여 창업,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관련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① 소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기술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위한 소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전담지도 요원을 임명·운영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10조제2항 각호가 정하는 보육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시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

2. 수탁자가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



야별로 관련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졸업 및 퇴거

제25조(졸업) ①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킬 수 있다.

1.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소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입주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

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보육사업관련 재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소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결정을 사전통보하여야 하며 퇴거희망일에 자동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처리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계획의 추진 및 변경

제27조(사업계획추진)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매분기 경과 후 5일 이내에 사업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지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1.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
-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제28조(변경승인) ①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

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품목(한국 표준산업분류상 3단위 이내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변경 계획서 및 사유서
- 2.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무회계

제29조(회계) 보육센터의 회계는 수탁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여 독립재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재원의 부담) ① 이 규칙에 의한 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계되는 자금의 일부를 투자금융회사 등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1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사업연도 개시 6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운용계획
- 2. 세부사업집행계획

제32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회계연도 개시일 6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사업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현금 등의 계리) ① 수탁자는 이 규칙에 의한 수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수탁자의 다른 현금 및 물품 등과 구분하여 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한 경비를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및 물품 등의 계리, 보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재정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목적 외 사용금지) 지급된 위탁운영비는 당해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서울특별시 창업보육센터 입주부담금					
종 류	구 분	업 종 별			비 고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원서비스업	
입주보증금	30평미만	2,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평	
	30평이상	3,000,000원	3,000,000원		
임대료	연액	당해재산 가액의 25/1,000	당해재산 가액의 25/1,000	당해재산 가액의 50/1,000	단, 재산가액의 결정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제4호 의 규정을 준용한다.
냉·난방료	월액	징수비율 100%			개별작업장 면적기준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 공공요금	월액	징수비율 100%			개별작업장 사용량 기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공포(조례 제3205호, 95. 6. 10)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수탁자는 보육센터의 기구·정원 및 운영계획과 예산이 수반되거나 입주자의 권리변동과 관계 있는 사항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제4조)
- 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제18조).
- 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23조)
- 라. 보육센터의 회계는 수탁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제29조)
- 마.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제35조)

훈 령

서울특별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5. 9. 5

서울특별시장 조 순 (인)

●서울특별시훈령제823호

서울특별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재정운용에 대한 종합심의·조정을 위해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의 재정운용 전반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 3. 재원배분방법 및 중점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 4. 분야별,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 5. 예산편성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6. 기채 등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예산, 재정운용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 3 조(보고)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은 회의개최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행정2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기술심사관이 된다.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필요할 경우 수시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케 할 수 있다.

제 7 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 투자관리담당관이 되고 주관간사는 업무소관에 따라 2인 중 1인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8 조(실무조정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

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정반을 둔다.

② 실무조정반은 반장에 재정기획관, 반원에 예산담당관, 투자관리 담당관, 기획담당관, 심사분석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행정과장, 재정과장 및 4급 공무원의 관제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조정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반장이 정한다.

④ 실무조정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총괄계장, 재정기획계장이 되고 주관간사는 소관업무에 따라 2인 중 1인이 된다.

제 9 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자료 및 의견제출 등 요구) 위원회 및 실무조정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예산·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 심의, 조정 체계를 갖추므로써 재정운용의 합리화

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편성, 재원의 배분, 사업별 투자  
순위결정 등 재정운용과 관련된 중  
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제2  
조).

나.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  
타부시장2인, 기획관디실장, 국장급  
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  
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함  
(제4조, 제6조).

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  
토하고 관계 부서간 의견조정 등 위  
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관을 반장으로, 관련 부서  
장들 만원으로 하는 실무조정반을  
둔(제8조).

예 규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중개  
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5. 9. 5

서울특별시장 조 순 (인)

●서울특별시예규제609호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  
지침중개정지침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발간계획.”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중 “11인”을 “13인”으로, “6  
인”을 “8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홍보물 시안”을 “주관부  
서에서 선정한 단일 홍보물 시안”으로 한  
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심의) ①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신청된 홍보물에 대하여 문안,  
색상, 레이아웃, 분량, 내용의 타당성·적  
합성, 시의적절성 등을 심의한다.

② 주관과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당해 홍보물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홍보물제작 심의의 전문성 제고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을 증원  
하고, 시장홍보물의 심의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에 주관부  
서에서 명확하게 판별하여 심의 요청  
하게 함으로써 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에서 발간계획을 삭제함(제2조).

나.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외부 심의  
위원 증원(제2조)

○ 외부위원(전문가)을 2인 증원(6인  
이내에서 → 8인 이내로)함.

다.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5조, 제5조의2)

○ 심의신청시 첨부하는 홍보물시안  
은 주관부서에서 선정한 단일 시안  
으로 규정

○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문안,  
색상, 레이아웃, 내용의 타당성·적합  
성, 시의적절성 등으로 규정

○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당해  
홍보물제작에 반영하도록 규정

**고 사**

은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9. 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5-251호

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합 및 단미사료의 성분등록사항을 갈

- 1. 등록업체명: 한국마스타푸드(유)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7
- 대표자: 방 회 열

등록사료(7종): 미국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880	수입 배합 사료	큰개용 34호 사료	애완견 사료	8.0% 이상	3.0% 이상	0.1% 이상	0.13% 이상	1.0% 이하	5.0% 이하
(PEDIGREE CHOICE CUTS IN SAUCE WITH BEEF CAN)									
서울-881	수입 배합 사료	큰개용 35호 사료	애완견 사료	8.0% 이상	3.0% 이상	0.1% 이상	0.13% 이상	1.0% 이하	5.0% 이하
(PEDIGREE CHOICE CUTS IN SAUCE COUNTRY STEW CAN)									
서울-882	수입 배합 사료	큰개용 36호 사료	애완견 사료	8.0% 이상	6.0% 이상	0.1% 이상	0.1% 이상	1.5% 이하	5.0% 이하
(PEDIGREE CHOPPED CHICKEN CAN)									
서울-883	수입 배합 사료	큰개용 37호 사료	애완견 사료	8.0% 이상	6.0% 이상	0.08% 이상	0.1% 이상	1.5% 이하	5.0% 이하
(PEDIGREE WITH CHUNKY BEEF CAN)									
서울-884	수입 배합 사료	큰개용 38호 사료	애완견 사료	8.0% 이상	6.0% 이상	0.05% 이상	0.1% 이상	1.5% 이하	5.0% 이하
(PEDIGREE WITH CHUNKY LIVER AND BEEF CAN)									
서울-885	수입 배합 사료	큰개용 39호 사료	애완견 사료	8.0% 이상	6.0% 이상	0.1% 이상	0.1% 이상	1.5% 이하	5.0% 이하
(PEDIGREE WITH MINCED BEEF CAN)									
서울-886	수입 배합 사료	큰개용 40호 사료	애완견 사료	8.0% 이상	6.0% 이상	0.11% 이상	0.15% 이상	1.5% 이하	5.0% 이하
(PEDIGREE WITH MINCED BEEF AND CHICKEN CAN)									

2. 등록업체명: (주)유진당밀				702-24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대표자: 이원익				
등록사료(2종): 파키스탄, 태국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전화당	수분	브릭스도	조섬유	조회분
서울-887	수입 단미 사료	당밀2	배합사료 원료용	45.0% 이상	-% 이하	75.0도	-% 이하	-% 이하
서울-888	수입 단미 사료	당밀3	배합사료 원료용	45.0% 이상	-% 이하	75.0도	-% 이하	-% 이하

3. 등록업체명: (주)유양상사				159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표자: 이우상				
등록사료(2종): 미국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889	수입 배합 사료	육성 개용 사료	간식용	27.0% 이상	10.0% 이상	0.17% 이상	0.44% 이상	3.0% 이하	6.0% 이하
(JERKY BEEF DOG SNACKS)									
서울-890	수입 배합 사료	어린개용 1호 사료	간식용	27.0% 이상	10.0% 이상	0.17% 이상	0.44% 이상	3.0% 이하	6.0% 이하
(PUPPY SIZE JERKY SNACKS)									

4. 등록업체명: (주)한국양돈진흥사업회				776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대표자: 전동용				
등록사료(1종): 미국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891	수입 배합 사료	갓난 돼지 사료 1	생후5-15 일령 급여	25.0% 이상	5.0% 이상	0.7% 이상	0.65% 이상	3.5% 이하	8.5% 이하
(FROSTCOATS)									

5. 등록업체명: 호산실업(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8-39 대표자: 김동주
등록사료(1종): 캐나다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892	수입 배합 사료	육성 광어용 사료	생후3개월부터	52.0% 이상	17.0% 이상	1.85% 이상	1.3% 이하	1.0% 이하	11.0% 이하

6. 등록업체명: (주)원종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5-5 대표자: 최우창
등록사료(1종): 캐나다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893	수입 배합 사료	육성 광어용 4호사료	생후3개월부터	52.0% 이상	17.0% 이상	1.85% 이상	1.3% 이상	1.0% 이하	11.0% 이하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5-241호  
소방시설의설계업및공사감리업  
등록공고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 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5. 9. 5  
서울특별시장

상 호 (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등급 및 분야)
국도 엔지니어링	강동구 성내동 319-10	강은주	제95-210호	95.8.16	○ 소방시설설계업 및 공사감리업 (3급기계·전기분야)
(주)맥앤드 엔지니어링	서초구 방배4동 882-30	박종인 의 1	제95-211호	95.8.16	○ 소방시설설계업 (2급기계·전기분야)



상 호 (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등급 및 분야)
(주)종합 건축사 사무소 담	광진구 자양동 220-153 (금관빌딩 601호)	황용연 의 1	제95-212호	95.8.28	○ 소방시설설계업 및 공사감리업 (2급기계·전기분야)
기술사 사무소 명진	강남구 역삼동 736-31	고만익	제95-213호	95.8.28	○ 소방시설설계업 (2급전기분야)

●서울특별시공고제1995-242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신청공고

전기공사업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전기공사업면허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 9. 5

서울특별시장

1. 공사업의 종류: 제2종 전기공사업
2. 신청서의 접수기간: 95. 10. 11~95. 10. 13(7일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및 공휴일은 신청을 받지 않음)
3. 면허신청대상: 접수일 현재 전기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춘 자
4.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 신청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5.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반서류 및 수수료(서울특별시 수입증지 20,000원)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구청 산업과 및 서울특별시 연료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1995-243호

다단계판매업업무정지처분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1995. 9. 5

서울특별시장

1. 상호: 그레리찌코리아(주)
2. 대표자: 전명길
3.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3-26
4. 업무정지처분 기간: 1995년 8월 31일부터 1개월
5. 업무정지처분 사유: 다단계판매조직의 부당한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음.

공 문 시 행

문서번호 치수 13330-976

시행일자 1995. 9. 5

수 신 전기관

참 조 수신처참조

제 목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서울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오니 희망부서에서는 '95.9.15.까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내 관리전환요청이 없을시는 희망부서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장부가액 (천 원)	취득일	상 태
7440-204	컴퓨터 (큐닉스)	OMNI-6600 XT	대	1	1,056	90.6.5	불 량
7440-204	컴퓨터 (큐닉스)	OMNI-6600 XT	대	1	862	90.7.23	불 량

구 고 시

●성북구고시제1995-75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5호(1988. 1. 13) 및 동 고시 제77호(1993. 3. 18)로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31호(1993. 5. 15)로

지적승인된 “월암교~종암대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42호(1995. 5. 8)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한 사항 중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995. 9. 5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나. 사업내역(변경없음)

사 업 의 종 류	사 업 시 행 지 역	사 업 규 모	비 고
월암교~종암대교간 도로개설공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78~28-28	폭(B)= 12m 연장(L)=600m	

- 다. 사업 시행자(변경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사업인가일로부터 96. 12. 31까지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따로 붙임.
-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따로붙임.
- 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토목과(920-3405~8)와 건설관리과(920-3400~3)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따로붙임: 변경토지조서 1부

변경 토지조서

연 번	변 경 전							변 경 전							
	소재지 주소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m <sup>2</sup>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계인	소재지 주소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m <sup>2</sup>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3	성북구 종암동 3-1381	대	29	29	도로	이병래	도봉구 수유동 8-141		성북구 종암동 3-1381	대	29	29	대지	이병래	도봉구 수유동 8-141
						이찬우	도봉구 수유동 24-16							이찬우	도봉구 수유동 24-16

제 1920 호

시

부

1995. 9. 5

46-19

**●용산구고시제1995-22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  
 변경인가

1. 용산구고시 제1994-8호(94. 3. 3)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 계획인 가된 "후암동 389-21~378-2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9. 5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동없음): 후암동 389-21~378-2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동없음)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2) 사업의 명칭: 후암동 389-21~378-2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격(변동없음):  
 B=6m, L=77m

라. 사업시행자 성명(변동없음): 용산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동없음): 인가일~1995.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변경사항): 따로붙임.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변동없음): 따로붙임.

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동사항 없음): 따로붙임.

별첨: 변경 물건조서 1부

변경 물건조서

연 번	당 초	변 경					소 유 자		비 고
		소재지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실제 이용 상황	면적 (㎡)	성 명	주소	
1	변경없음	후암동 378-3	담장	벽돌 9.5× 1.7m	담장	1식	정들남	용산구 후암동 378-2	누락
			대문	철재 1.9× 1.9m	대문	1식			

**●용산구고시제1995-23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  
 변경인가

1. 용산구고시 제1994-50호(94. 12. 15)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인가된 "후암동 412-20~410-2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였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련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및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등 건물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9. 5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변경없음): 후암동 412-20~410-2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2) 사업의 명칭: 후암동 412-20~410-2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B=6m, L=55m  
 라. 사업시행자 성명(변경없음): 용산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1997.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변경사항): 별첨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변경사항): 별첨  
 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별첨: 변경·물건조서 1부

변경 물건조서

연 번	당 초					변 경					비 고		
	소재지 및 주 소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실제 이용 상황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소재지 및 주 소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후암동 412- 28	건물	블록 / 기와	주택	11.9	김범순 후암동 412-28	후암동 412- 28	건물	블록 / 기와		주거	11.9

●강북구고시제1995-28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  
 폐지인가고시

1. 도봉구고시 제1995-7호(95. 2. 17)로 실시계획 인가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수도)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5조(실시계획인가) 및 제27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계획 폐지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9. 5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연번	구분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 모	시설결정고시	지적승인고시
1	당초	수유1동 472-16~472-265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수유1동 472 주변도로 개설공사	폭원: 6m 연장: 90m	서고 3호 (69. 1. 18)	서고 제3호 (69. 1. 18)
	폐지	수유1동 472-16~472-265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수유1동 472 주변도로 개설공사	폭원: 6m 연장: 90m	서고 3호 (69. 1. 18)	서고 제3호 (69. 1. 18)
2	당초	미아1동 838-838-20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미아8동 838 주변도로 개설공사	폭원: 6m 연장: 50m	서고 3호 (69. 1. 18)	서고 제3호 (69. 1. 18)
	폐지	미아1동 838-838-20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미아8동 838 주변도로 개설공사	폭원: 6m 연장: 50m	서고 3호 (69. 1. 18)	서고 제3호 (69. 1. 18)

나.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장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인가일로부터 1996년 12월 31  
일까지

○폐지: 고시일로부터

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은평구고시제1995-3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시고시 제181호(73. 11. 26)로 도시  
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은평구고시 제  
1995-16호(95. 4. 13)로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인가된 응암동 68-1 일  
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  
권한위임규칙 제2657호 규정에 의거 도  
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

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건설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9. 5

은 평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은평구 응암동 68-1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명칭: 응암동 68-1~응암동 70-12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도로개설: B=8m, L=100m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은평구 녹번동 84

○성명: 은평구청장 김병석(변경전)→이  
배영(변경후)

(5) 사업기간: 인가일~97. 2.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

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8)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9) 관계도면: 은평구청 건설국 토목과 비  
 치 도면과 같음.

토지 및 건물(지장물) 조서  
 (토 지)

연 번	지번	지 목	토 지		소 유 자		변 경 전			변 경 후		
			총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 소	관 계 인		비 고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응암 동 72 -12	대 지	63	63	이완식(지분2분 의1) 은평구 응 암동 42-60 거 산빌라 201							
					이호상(지분2의 1) 은평구 응암 동 72-6	서부세무서 은평구 응암 동 84-5(근저당권설정)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가압류)	이완식 은평구 응암동 42-60 거산빌라 201 (이전청구권가등기)	(국)서부세무서 은평구 응암동 84-5(근저당권 설정)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가압류)	이완식 은평구 응암동 42-60 거산빌라 201 (이전청구권가등기)	한국보증보험(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22-10(가압류) 삼성신용카드(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 (가압류)

●은평구고시제1995-34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실시계획인가

1. 은평구고시 제1995-27호(95. 6. 21)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 및 지적 승인된 역촌동 55-37 의 1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 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2657호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부소방서 소방과 및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9. 5

은 평 구 청 장

- (1) 사업시행지: 은평구 역촌동 55-37, 56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 명칭: 서부소방서 역촌파출소청사 신축

공사

- (3) 사업규모
  - 토지면적: 721.55㎡
  - 건축연면적: 658.8㎡(지하 1층, 지상 2층)
-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은평구 녹번동 48-5
  - 성명: 서부소방서장
- (5) 사업기간: 인가일-96. 2. 28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 (8)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9) 관계도면: 서부소방서 소방과 및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물건	소유자		이용되고 있는 사업의 용도
					주소	성명	
1	은평구 역촌동	55-37	333.2	대지	종로구 신문로2가 1-117	류재성	실의태니스장
		55-37	51.28	시멘블록조 평슬래브 사무실			
2	은평 역촌동	55-56	388.4	대지	종로구 신문로2가 1-117	류광희	실의태니스장

●도봉구고시제1995-34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

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봉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5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9. 5

도봉구청장

- 1. 사업명: 도봉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설
- 2. 사업주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진욱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가. 위치: 도봉구 도봉2동 18-2 일대
  - 나. 대지면적: 58,549.68㎡
  - 다. 건축면적: 11,564.08㎡
  - 라. 연면적: 155,975.52㎡
  - 마. 규모: 아파트 16동 2,4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변경내역

- 가. 사업기간
  - ↳ 당초: 93.11~95.7.30
  - ↳ 변경: 93.11~96.7.30
- 나. 변경사유: 저장물 철거 및 부지조성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 5. 승인조건: 공동주택건설사업기간이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기간(91.5.11~96.5.10)과 상이함으로 별도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변경(사업기간연장) 절차 이행할 것

- 6. 기타 사항: 종전과 같습니다.

●구로구고시제1995-5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69.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계획확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1995-130호(95. 7. 12)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및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9. 5

구로구청장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오류1동 4주변 도로개설공사
  - 나. 사업의 시행지: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 4-88
  -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6m, L=10m
  - 라. 사업시행자: 구로구청장
  - 마. 사업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2년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토지 및 물건조서
  - 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별첨조서
- 따로붙임 토지, 물건조서 1부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오류1동 4-88	대	20	20	도로	김종갑	구로구 오류동 산 8	1층 5㎡ 2층 5㎡

물 권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용도 (구조)	수용(사용)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오류1동 4-7	평육개 연와조 (전물)	10(2층)	김종갑	구로구 오류동 산 8

●서초구고시제1995-49호

도시계획사업(미관광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271호(94. 8. 11)로 도시계획 결정 및 서초구고시 제1994-45호(94. 8. 11)로 지적 승인되고, 서초구고시 제1995-24호(95. 5. 22)로 실시계획인가 및 서초구고시 제1995-34호(95. 6. 21)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9. 5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초구 원지동 361-1의 1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미관광장)
- 명칭: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공사

다. 변경인가 고시내역

- 당초시행면적: 10,020㎡
- 변경시행면적: 9,999㎡(감-21㎡)
- 변경사유: 단순면적 정정

토 지 조 서

소 재 지	면적(㎡)	당초편입면적(㎡)	변경편입면적(㎡)	비 고
서초구 원지동 362-1	1,793	1,731	1,710	감 21㎡

라. 기타사항: 변경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570-6395~7)로 문의 바람.

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9. 5

성 북 구 청 장

●성북구고시제1995-7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성명: 계성제지그룹 주택조합 및 3개 조합장 이성범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261  
 성북B/D 301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  
 가. 위치: 성북구 정릉동 431-12 의 37  
 필지  
 나. 면적  대지면적: 10,338.70㎡  
 건축면적: 2,383.18㎡

도로후퇴면적: 291.3㎡  
 연면적: 36,619.82㎡

다. 규모: 아파트 2동 지하 3, 지상 8~15층 29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1995. 9~1997. 8  
 5.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계획 결정조서 (첨부)

도시계획결정조서

공사명: 계성제지 그룹 직장조합 의 3개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단위: ㎡)

순번	대 지 위 치	지목	공부상 대지면적	도 로 기부채납	실사용대지면적	소 유 자
1	정릉동 431-12	대지	1,091	7	1,084	계성제지
2	431-13	전	185	31.51	153.49	계성제지
3	431-14	대지	354	13.59	340.41	계성제지
4	431-37	전	66	54.20	11.80	재 무 부
5	500-1	대지	26	18	8	계성제지
6	500-2	대지	268	55	140	계성제지
7	501-1	대지	63	48	15	계성제지
8	501-2	대지	63	1	62	계성제지
9	501-3	대지	96	27	69	계성제지
10	501-4	대지	13	2	11	계성제지
11	산 87-21	임야	1,322	15	1,037	계성제지
12	산 87-186	임야	268	19	249	계성제지
합 계			3,815	291.3	3,180.7	
비 고		대지 500-2호 268㎡ 중 73㎡는 시설녹지기부채납이고 55㎡는 도로기부채납면적임				

도시계획 결정조서 공사명: 계성제지 그룹 직장조합 의 3개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단위: m <sup>2</sup> )						
순번	대 지 위 치	지목	공부상 대지면적	시설녹지 기부채납	실사용대지면적	소 유 자
1	정릉동 431-18	전	995	15	980	계성제지
2	431-75	임야	296	62	234	재 무 부
3	498-3	대	729	41	688	계성제지
4	499	전	274	191	83	계성제지
5	500-2	대지	268	73	140	계성제지
6	502-4	대지	83	45	38	계성제지
7	산 87-23	임야	4,258	3,132	1,126	계성제지
8	산 87-26	임야	502	502	0	계성제지
합 계			7,405	4,061	3,239	
비 고		대지 500-2호 268m <sup>2</sup> 중 73m <sup>2</sup> 는 시설녹지기부채납이고 55m <sup>2</sup> 는 도로기부채납면적임				

  

<p>●관악구고시제1995-34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40호(93. 12. 30)로 시설결정, 관악구고시 제1994-48호(95. 1. 7)로 지적승인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1995-21호(95. 6. 8)로 지적정정 고시되고, 관악구공고 제1995-161호(95. 7. 31)로 공람공고한 산림12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시는 관악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나 기타 사항은 상기 장소에</p>	<p>문의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5. 9. 5</p> <p style="text-align: right;">관 악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13-3~산 117간</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림1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p> <p>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8m, L=184m</p> <p>라. 사업시행자: 관악구청장</p> <p>마. 사업시행 기간: 인가일로부터 1997. 12. 31까지</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별첨</p> <p>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p>
---	--

: 별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함.	
토 지 조 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신림동 산 117-9	임	1,091	1,091		서울 종로구 관철동 21 전주이씨 화의군파종회
2	신림동 산 117-12	임	19	19		국(기상청)
3	신림동 산 114-15	임	6	6	김인동	서울 중구 신당동 340-53
4	신림동 산 114-13	임	288	288	김인동	서울 중구 신당동 340-53
5	신림동 732-7	대	15	15	김동수 외 79명	신림12동 732-5
	계			1,419		
<p>●서초구고시제1995-50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도로·광장) 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271호(94. 8. 11) 및 서초구고시 제1994-30호(94. 8. 22)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광장)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1994-30호(94. 8. 22), 제1994-31호(94. 8. 29)로 지적승인된 우리 구 반포동 19-3 일대 서울종합터미널(주) 신축계획과 함께 추진되어 온 반포천복개에 의한 공용주차장건설, 사평로 확장, 관통도신설, 광장확장에 대하여 서초구공고 제1994-</p>					<p>388호(94. 11. 30)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법 제23조제5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주차장, 도로, 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같은 법 제23조제6항,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초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95. 9. 5 서 초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초구 반포동 118-3 일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p> <p>○종류: 도시계획사업(주차장, 도로, 광장)</p> <p>○명칭: 반포천복개 공용주차장건설, 사</p>		<p>평로확장(반포천복개구간), 관 룡도로신설, 광장(105호) 확장, 광장(107호) 확장</p> <p>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p> <p>○주소: 서초구 반포동 19-3</p> <p>○성명: 서울종합터미널(주) 대표이사 최석산</p>	
<p>라.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p>			
시 설 명	위 차	면적(규모)	비 고
주 차 장 건 설	서초구 반포동 118-3 일대 (반포천 및 암거복개구간)	19,460㎡ (복개주차장 연면적 : 32,593.7㎡)	○공용주차장: 603대 ○편의시설: 6,338.06㎡
도 로 확 장 (사명로)	서초구 반포동 118-12 일대 (사명로 반포천복개구간)	B=40→50~65m L=594m	○차량(고속버스, 택시) 통 행로 및 보행자도로 확보 ○택시·버스정류장 및 녹 지분리대 설치 등
도 로 신 설	서초구 반포동 118-9 일대 (관룡도로)	B=8m L=52m	
광 장 확 장 (105호)	서초구 반포동 118-8 일대 (반포 제2광장)	1,398㎡	
광 장 확 장 (107호)	서초구 반포동 118-4 일대 (반포 제4광장)	203㎡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97. 12. 30</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토지조서)</p>		<p>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토지조서)</p> <p>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p>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규모)	무상양여자	취속관청
1	주 차 장	반포동 118-3 일대 (반포천 및 암거복개 구간)	19,460㎡ (복개주차장 연면적: 32,593.7㎡)	서울종합 터미널(주)	서울특별시
2	도 로 (사평로)	반포동 118-12 일대 (사평로 반포천복개구간)	B=40→50~65m L=594m	"	"
3	도 로	반포동 118-9 일대 (관통도로)	B=8m L=52m	"	서초구
4	광 장 (105호)	반포동 118-8 일대 (반포 제2광장)	1,398㎡	"	서울특별시
5	광 장 (107호)	반포동 118-4 일대 (반포 제4광장)	203㎡	"	"

첨부: 토지조서 1부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시설별 편입면적(㎡)					소유자
				주차장 신 설 (반포천, 암거복개 구간)	사평로 확 장 (B=40m →50~ 65m, L=594m)	관통도로 신 설 (B=8m, L=52m)	광장확장 (105호)	광장확장 (107호)	
계			44,005.7	19,460.0	9,915.8	430.8	1,397.6	203.4	서울특별시
1	반포동 118-2	구거	7,409.9	2,511.6		92.9	169.0		"
2	반포동 118-3	제방	11,823.4	3,621.4		142.7	373.7	171.1	"
3	반포동 118-5	도로	348.6	161.4			187.2		"
4	반포동 118-6	"	3,683.0	3,581.1		48.2			"
5	반포동 118-8	제방	1,111.5		461.1		528.5		"
6	반포동 118-9	"	10,512.9	8,728.6	1,541.9	147.0		32.3	"
7	반포동 118-11	하천	830.6		503.9		139.2		"
8	반포동 118-12	"	6,038.5	855.9	5,161.6				"
9	반포동 118-15	제방	2,247.3		2,247.3				"

**구 공 고**

●**서초구공고제1995-28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자진반납)공고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를 행정처분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5. 9. 5  
서 초 구 청 장

가. 자진반납 업체

일련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자본금	비 고
1	94-22-21	(주)대륙플랜트	김용원	양재동 313-5	3억원	자진반납

●**동작구공고제1995-134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공람공고

동작구고시 제25호(95. 5. 15)로 도시계획(사회복지시설)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사당동지역 사회복지관 신축공사의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995. 9. 5  
동 작 구 청 장

1.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2. 공람개요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68-6 외 4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명칭-사당동지역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다. 사업규모

대지-486㎡, 전평-1260.69㎡

라. 사업시행자

토지 등 보상 및 취득-동작구  
공사-동작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공사착공일부터 180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소재지, 지번·지목·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별첨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3.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 바랍니다(사회복지과: 820-1355~7).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사당동 268-6	대 지	26	26		강홍수 사당동 91-154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2	사당동 268-22	잡종지	149	149		정경은 외9인	은평구 갈현동 414-16
3	사당동 268-41	잡종지	142	142		정경은 외9인	은평구 갈현동 414-16
4	사당동 268-42	잡종지	119	119		정경은 외9인	은평구 갈현동 414-16
5	사당동 270-12	대 지	50	50		이천복	사당동 270-12(근저당 제일은행 종로구 공평동 100(중앙로 출장소))

건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사당동 270-12	건물	1층기와, 시멘트블럭	37.29	주택	이천복	사당동 270-12(근저당 제일은행 종로구 공평동 100(중앙로 출장소))

●성동구공고제1995-171호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공람공고

1.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1995. 8. 26~1995. 9. 11 (14일간)

나. 공람장소: 성동구 도시정비과(290-7385~7)

1995. 9. 5

성 동 구 청 장

1)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도시계획명	위 치	면적(㎡)	비 고
결 정	도시설계지구	금호동 332 일대	22,800	금호지구중심 용도지역 변경결과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 결정

2)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연번	구분	도시계획명	위 치	면적(㎡)	비 고
1	기정	일반주거지역	금호동 332 일대	3,600	도시설계 결과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될 수 있음(금호지구중심)
	변경	근린상업지역	"	"	

연번	구분	도시계획명	위 치	면적(㎡)	비 고
2	기정	일반주거지역	금호동 546-1 일대	19,200	· 도시설계 결과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될 수 있음(금호지구중심)
	변경	준 주거 지역	"	"	
3	기정	일반상업지역	용담동 234 일대	74,900	· 장안평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일대(군차지구중심)
	변경	유통상업지역	"	"	

3)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	비 고
결정	주차장	옥수동 77-3 일대	1,380	유수지복개후 주차장 설치

4) 관계도면(생략: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용산구공고제1995-116호

연차별집행계획수립공고

1.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2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1995. 9. 5

용 산 구 청 장

연차별 집행계획

번호	사 업 의 명 칭			사업시행기간	비 고
	시설의 종류	명 칭	폭(m)·연장(m)		
1	(도로) 소로 2류	이태원 254-10~229-5간 도로확장공사	기존 B=4~6m B=8m L=320m	95~96	1단계
2	(도로) 중로 1류	서계동 224-38~238-9간 도로개설공사	기존 B=4m B=15m L=340m	97~99	1단계
3	(도로) 소로 2류	청과3가 27~122간 도로확장 도로개설공사	기존 B=0~3m B=8m L=240m	98~99	1단계
4	(도로) 소로 2류	청과3가 132-28~효창동 25간 도로개설공사	기존 B=4~6m B=8m L=810m	99~2001	2단계
5	(도로) 중로 3류	후암동 404-4~448-14간 도로개설공사	기존 B=0~6m B=12m L=940m	2001 이후	2단계
6	(도로) 소로 1류	보광동 14-3~한남동 548간 도로확장공사	기존 B=2~8m B=10m L=520m	2001 이후	2단계
7	(도로) 소로 2류	산천동 152-1-4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기존 B=0~4m B=8m L=1,250m	2001 이후	2단계

번호	사 업 의 명 칭			사업시행기간	비 고
	시설의 종류	명 칭	폭(m) 연장(m)		
8	(도로) 중로 3류	보광동 238-9~이태원동 100-36간 도로확장공사	기존 B=6m B=12m L=490m	2001 이후	2단계
9	(도로) 소로 1류	한남동 639-3~618-2간 도로확장공사 및 개설공사	기존 B=0~6m B=10m L=350m	2001 이후	2단계
10	(도로) 소로 2류	이태원 664~296간 도로개 설공사	기존 B=6~8m B=8m L=340m	2001 이후	2단계
11	(도로) 소로 2류	한남동 348-304간 도로개 설공사	기존 B=2~6m B=8m L=90m	2001 이후	2단계
12	공 원	이태원공원	2,361㎡	96~97	1단계
13	공 원	도동공원	2,542㎡	96~2000	1단계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도시정  
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금천구공고제 1995-94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처분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6조제 3항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  
업을 지정취소하였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5. 9. 5

금 천 구 청 장

○ 행정처분 업소

지정 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사유	청문 여부	행정처분 내 역
54	중앙엔지니어링	구두현	시흥3동 966 철재상가 19-218	무단폐업	불참	지정취소
91	석산설비	최석산	독산본동 163-8	무단이전	불참	지정취소
113	신성종합설비	박상득	시흥5동 825-17	무단이전	불참	지정취소
133	유한설비	유관환	시흥5동 245-13	무단이전	불참	지정취소

● 성북구공고제 1995-218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

하고자 하는 우리구의 도시계획안에 대하  
여 같은 법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5. 9. 5

성 북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1995. 8. 30~1995. 9. 13  
 나.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정비과(920-3385)  
 다. 공람개요(도시계획안)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연번	구분	규 모			사용형태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유별	폭원					
1	신설	소로	3	6m	일반도로	112	석관동 261-66	석관동 261-340	
2	신설	소로	1	10m	일반도로	224	장위동 231-281	장위동 산 3-113	

라. 관련도서: 도면생략(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를 인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9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관악구공고제 1995-188호

전문건설업면허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 9. 5  
 관 악 구 청 장

양 도 인가일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상 호	대표자	소재지
95. 8	철물 92-서울-11-165	명보산업	전호진	관악구 봉천동 1673-21	명보산업 (주)	전호진	관악구 봉천동 1673-21

● 구로구공고제 1995-157호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1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184-4 외 6필지
2. 면적: 4,435㎡
3. 아파트명: 명성아파트 재건축
4. 규모: 24층 아파트 2동 122세대
5. 사업주체: 명성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김희철 외 65명
6. 공고기간: 95. 8. 30~95. 9. 13(14일간)

1995. 9. 5  
 구 로 구 청 장

1. 지적구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성북구공고제1995-216호**  
**건축허가및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  
**허가를위한서류공람공고**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변경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구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 9. 5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서경대학교 도시계획사업 (학교)  
 2.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6-1 의 16필지  
 3. 사업내용  
 가. 학생회관(청운관) 별동증축: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6,044.80㎡

4. 시행자  
 가. 주소: 성북구 정릉동 산 16-1  
 나. 성명: 학교법인 서경대학원

5. 공람기간: 95. 8. 26~95. 9. 9(14일간)  
 ※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건축과(920-3390)에 비치하고 있으나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공고제1995-15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에 동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5. 9. 5  
 구 로 구 청 장

인가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95. 8	설비공사업 제92-서울12-242호	진우기공(주)	구로구 구로동 609	김현진	(주) 진우기전	구로구 구로동 552-60 대창빌딩 401호	임동열

**●강북구공고제1995-113호**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토지등**  
**보상계획열람공고**

1.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구간에 저축,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겠으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5. 9. 5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계획: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토지등 보상  
 나. 대상물건: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구간에 저축,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단, 항측판독결과에 따라 대상물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다. 보상시기: 95. 1(예정)  
 라. 보상방법 및 절차: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후 개인별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보상 불가시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  
 마.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95. 9. 2~ 95. 9. 21(20일간)  
 바. 열람장소: 강북구청 주택과 및 미아1동사무소  
 사. 기타사항: 잔여지(건물포함) 등이 주거공간으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대수용 청구 가능

●노원구공고제1995-307호

도시계획공람공고

1. 우리 구 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1995년 8월 28일~1995년 9월 10일(14일간)

나.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도시정비과(950-3385-7)

다.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1995. 9. 5

노 원 구 청 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결정	수락생활권 중심	상계1동 1132 일대	일반주거	준주거	31,020	상계계획구역
"	구심권	상계2동 노원역 남측 일대	일반주거	"	43,060	" (일반주거지역 42,097㎡ 자연녹지지역 963㎡)
"	공동생활권 중심	공릉1동 670 일대	일반주거	일반상업	25,945	도시설계지구
"	상계생활권 중심	상계3동 상계시장 일대	"	준주거	25,380	"
"	월계생활권 중심	월계2동 성북역 주변	"	준주거	19,142	"
"		월계3동 104 일대	일반상업	일반주거	6,818	

나)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용도지구명	지구구분	위 치		면적(㎡)	비고	
결정	도시설계지구	공공생활권	공룡1동 670 일대		25,945		
"	"	상계생활권	상계3동 상계시장 일대		25,380		
"	"	월계생활권	월계2동 성북역 일대		19,142		
다)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							
구분	위 치	용도지구명		규 모			비고
		당초	변경	폭(m)	연장(m)	면적(㎡)	
변경 결정	화랑로(성북구계 ~태능역간)	4종 미관지구	5종 미관지구	12	2,580	30,960	
"	동일로(공룡동 398-5~불암역간)	"	"	12	3,070	36,840	
라)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 결정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상계동 산 161 -2, 11 일대	5,363,270	5,336,200	감 27,070	주거환경개선 예정지구	
마)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폭(m)	연장(m)			
결정	하수 암거	중계2 택지개발지구 외(중계동 400-2)~ 당현천(중계동 416)	15~18	133	하수 BOX 4@3.0m×2.5m L=133m 오수 D=700m/m, L=133m 중계2택지개발지구의 사유지상하수도시설 완료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7조6항)에 의한 보상		

●노원구공고제1995-309호

루기과열지구지정공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루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995. 9. 5

노원구 청장

1. 지정지역: 노원구 상계2동 320-3외 71필지
2. 토지면적: 20,620.0㎡
3. 주택명: 노원A지구 중앙하이츠아파트
4. 사업규모: 지하 2층/지상 9~25층 아파트 9동 795세대 및 부대부리시설
5. 사업주체

- 1) 노원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재황
- 2) 제2노원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동우
- 3) (주)중앙건설 대표이사 조승규
6. 공고기간: 1995. 8. 25~1995. 9. 25(30일간)

●송파구공고제1995-156호

민영주택건설사업장

루기과열지구지정공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지역을 루기과열 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5. 9. 5

송파구 청장

연번	지정구역	대지면적	아파트 명	건립규모	분양세대수	사업주체
1	송파구 오금동 15, 20	12,936.1㎡	오금동 현대아파트	아파트 2동, 8 ~19층, 438세대	192세대	오금 제2구역 주택개발 재개발 조합
1	송파구 풍납동 162-25, 26, 27, 163-13, 27호	5,528.1㎡	풍납동 대아아파트	아파트 1동, 7 ~13층, 140세대	100세대	협성연립 재건축조합

●은평구공고제1995-178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493호(95. 6.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동고시 제2948호(66. 12. 7)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은평구고시 제1995-8호(95. 3. 2)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및 제1995-9호(95. 3. 2)로 변경인가고시된 중로 2류 61호 수색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5. 9. 5

은평구 청장

가. 사업명: 수색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나. 위치: 수색동 산 31-4~신사동 산 98-3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15m, L=419m

-터널입구 U턴 구간 도로시공선 확



보에 따른 토지편입면적 565m<sup>2</sup>(신사동측)  
 라. 사업의 시행자: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로-97.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 수색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신사동측)

연번	지번	지목	토 지		소 유 자	
			총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주 소	성명
1	신사동 155-1	대	10,358	6	(주)신성 강남구 역삼동 820-8	
2	308	전	129	40	김봉석 서대문구 북가좌동 227-21	
3	산 98-6	임	1,363	203	정사선 마포구 도화동 15-10	
4	155-14	임	52	52	서울특별시	
5	155-15	임	22	22	서울특별시	
6	155-16	임	244	242	서울특별시	
	계		12,168	565		

**한강관리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5-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9. 5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 연월일	점용위치	지목	점용면적(m <sup>2</sup> )	점용면적	점용기간	허가받은자	
						주소	성명
95.8.2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45-24	하천	61.2	강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부대 시설 설치	95. 8. 6~ 96. 8. 5	마포구 합정동 345-24	현대건설(주) 강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 소장 주창섭

<p>●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5-92호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허가) 한강 구역 내에서 하천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선</p>	<p>박의 운항)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9. 5 한강관리사업소장</p>
--	---

허 가 연월일	운항허가 척 수	운항구간	허가기간	운항목적	허가를 받은 자	
					주소	성명
1995.8.24	유람선7척	한강(성산 대교~잠실 대교)	1995.1.1~ 1995.12.31	유선사업을 위 한 선박운항	서울 광진구 자양3동 584-11	새모유람선(주) 대표이사 이용화

<p>●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5-9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p>	<p>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1995. 9. 5 한강관리사업소장</p>
--	--

허 가 연월일	위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자	
						주소	성명
95.8.23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47선 한강	하천	1,259㎡	유선장	95.8.23~ 95.12.31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84-11	새모유람선 (주)이용화

<p>●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5-94호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허가) 한강 구역 내에서 하천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선</p>	<p>박의 운항)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9. 5 한강관리사업소장</p>
--	---

허가연월일	운항허가척수	운항구간	허가기간	운항목적	허가를 받은 자	
					주소	성명
1995. 8. 18	·부선 2척 ·예선 1척	한강 잠실수중보 ~강동대교	1995. 8.18 ~ 1995.10.31	가스관로매설을 위한 선박운항	서울 중로구 운니동 98-20	삼환기업 (주)김문일

### 인사발령

####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474호(1995. 8. 22)

소방본부 지방사무보조원(필기10등급)

최윤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소방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 유종진 원

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 김

대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위생원(사역10등급)

이중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방호원(방호10등급)

이창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장(7등급) 이종

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세종문화회관 지방전기원(10등급) 임홍

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세종문화회관 지방조무원(검수표9등급)

박상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난지하수처리(사) 지방기계원시보(10등

급) 박영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난지하수처리(사) 지방기계원시보(10등

급) 임희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수도10등급)

강왕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 9급 기술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481호(1995. 8. 25)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수도토목서기보 권영

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수도토목서기보 조성

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 지방법정직공무원 신규임용

발령 제482호(1995. 8. 25)

신규 정태호 지방법정직(비서관)5급 상  
당에 임함. 제1호봉을 급함, 내무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 5·6급 전보 및 근무명령

발령 제482호(1995. 8. 25)

내무국(광복50주년기념사업 추진요원)  
지방행정사무관 김경오 바른정기확단 전담  
요원(95. 8. 25~별도지시시까지)

문화과 예술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최호권  
내무국 바른시정기획단 전담요원(95. 8. 25  
~별도지시시까지)

교통기획과 교통운영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인철 내무국 바른시정기획단 전담요원  
(95. 8. 25~별도지시시까지)

시설계획과 가로계획2계장 지방토목사무  
관 선권수 내무국 바른시정기획단 전담요원  
(95. 8. 25~별도지시시까지)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정동윤 내무국 바른  
시정기획단 전담요원(95. 8. 25~별도지시  
시까지)

서울특별시장

#### 기능직공무원 휴직

발령 제483호

총무과 지방방호원(방호10등급) 김종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규정에 의  
하여 휴직을 명함

서울특별시장

#### 지방 5급 공무원 인사교류

발령 제484호(1995. 8. 25)

송파구 잠실제6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무녕 교통기획과 지하철도계장 발령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사무관 김태두 송

<p>과구전출 서울특별시 지방공단이사장 임명 발령 제485호(1995. 8. 24) 신규 김치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함 (임명일로부터 3년)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468호(1995. 8. 18) 야동병원 지방기계원시보(10등급) 조홍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시보(10등급) 박형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통신원시보(10등급) 박경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 이창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통신원시보(10등급) 조명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검침10등급) 차용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시보(10등급) 박석홍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총무과 지방통신원시보(10등급) 형연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가양하수처리사업소 지방기계원(10등급) 홍승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지방기계원시보(10등급) 황장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지방기계원시보(10등급) 박충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지방운전원시보(10등급) 최준경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지방운전원시보(10등급) 김성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지방운전원시보(10등급) 이완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신병원 지방건축원(10등급) 김오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지방조무원시보(집배10등급) 전병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운전원시보(10등급) 신동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지방기계원(10등급) 이성용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지방기계원(10등급) 송오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기능직 공무원 면직 발령 제483호(1995. 8. 23)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지방전기원(10등급) 전 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 방호익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검침10등급) 송오학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9급 기술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484호(1995. 8. 26)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수도토목서기보 주영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9급 기술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485호(1995. 8. 28)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지방화공서기보시보 송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	---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b> <b>기능직공무원 면직</b></p> <p>발령 제486호(1995. 8. 28) 세종문화회관 지방건축원시보(10등급) 허진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지방운전원시보 (10등급) 최부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b></p>	<p style="text-align: center;"><b>지방연구직공무원 면직</b></p> <p>발령 제489호(1995. 8. 29)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연구사 변종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b></p>
<p style="text-align: center;"><b>기능직공무원 파견근무</b></p> <p>발령 제487호(1995. 8. 28) 총무과 지방운전원(10등급) 이영삼 시설 관리공단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 95. 8. 28~96. 8. 27) 총무과 지방운전원(10등급) 김준호 청소 사업본부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 95. 8. 28~96. 8. 27) 총무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10등급) 정 옥년 시의회사무처 파견근무를 해제함, 청 소사업본부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 95. 8. 28~96. 8. 27)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사무보조원(타자10 등급) 김윤미 내무국(바른시정기획단) 파견 근무를 명함(파견기간: 95. 8. 28~96. 8. 27)</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b></p>	<p style="text-align: center;"><b>9급 행정직공무원 전입</b></p> <p>발령 제490호(1995. 8. 30) 용산구 지방행정서기보 박영애 서울특별 시 전입을 명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b></p> <p style="text-align: center;"><b>8급 기술직공무원 시보해제</b></p> <p>발령 제491호(1995. 9. 1) 동부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김현숙 지방 간호서기에 임함 동부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김정순 지방 간호서기에 임함 동부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윤미경 지방 간호서기에 임함 동부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정미라 지방 간호서기에 임함 동부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김연희 지방 간호서기에 임함 동부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윤정임 지방 간호서기에 임함 아동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유의경 지방 간호서기에 임함 아동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백경은 지방 간호서기에 임함 아동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정경하 지방 간호서기에 임함 아동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서귀주 지방 간호서기에 임함 아동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김은영 지방 간호서기에 임함 아동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박세용 지방 간호서기에 임함</p>
<p style="text-align: center;"><b>행정4급 전보</b></p> <p>발령 제488호(1995. 8. 28) 조사담당관 지방서기관 나전구 감사1담 당관 직무대리를 명함 청소사업본부총무부장 지방서기관 홍희영 인사과장에 보함 감사2담당관 지방서기관 차천복 조사담 당관 겸무를 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b></p>	

아동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지미정 지방간호서기에 임함  
 아동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구희정 지방간호서기에 임함  
 아동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장성희 지방간호서기에 임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박영숙 지방간호서기에 임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전영옥 지방간호서기에 임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홍순화 지방간호서기에 임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윤호숙 지방간호서기에 임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박은희 지방간호서기에 임함  
 정신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박찬미 지방간호서기에 임함  
 정신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김은경 지방간호서기에 임함  
 정신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이희숙 지방간호서기에 임함  
 정신병원 지방간호서기시보 이순옥 지방간호서기에 임함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인사교류

발령 제493호(1995. 9. 1)

성동구 지방운전원(10등급) 이동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운전원(9등급) 이주복 성동구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기계원(10등급) 이성근 대구광역시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

발령 제494호(1995. 9. 1)

신규 유지연 지방사무보조원(타자10등급)에 임함, 제1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규 박은희 지방사무보조원(타자10등급)에 임함, 제1호봉을 급함, 사회과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